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지역난방사업의 CDM사업 창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본부장 한 태 일

1. 교토메카니즘 개요

2005년 2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선진국(부속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유연성있게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비부속서국가)지위를 갖고 있어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만 사업유치국으로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인도, 남미 등에서는 CDM사업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제조공정, 매립가스 활용,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CDM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12개의 CDM사업이 UNFCCC 산하 CDM EB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산화학의 HFC 분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도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CDM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의 CDM사업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2005. 3월 CDM사업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005. 4월부터 3개월 동안 강남지사 수서열원 연료전환사업과 성남소각장 소각열 활용사업 등 CDM사업화 우선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였다.

타당성 검토결과, 2005. 9월 강남지사 수서열원 연료전환사업이 CDM사업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수서열원 연료전환 사업은 열전용보일러의 사용연료를 LSWR(초저유황왁스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약 5~6만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2006년 하반기까지 CDM EB에 등록할 계획이다.

우리공사에서는 CDM 시범사업 추진경험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으로 CDM사업 적용영역을 확대할 예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비부속서국가)지위를 갖고 있어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만 사업유치국으로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인도, 남미 등에서는 CDM사업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제조공정, 매립가스 활용,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CDM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부속서 국가)에 편입되면 배출권거래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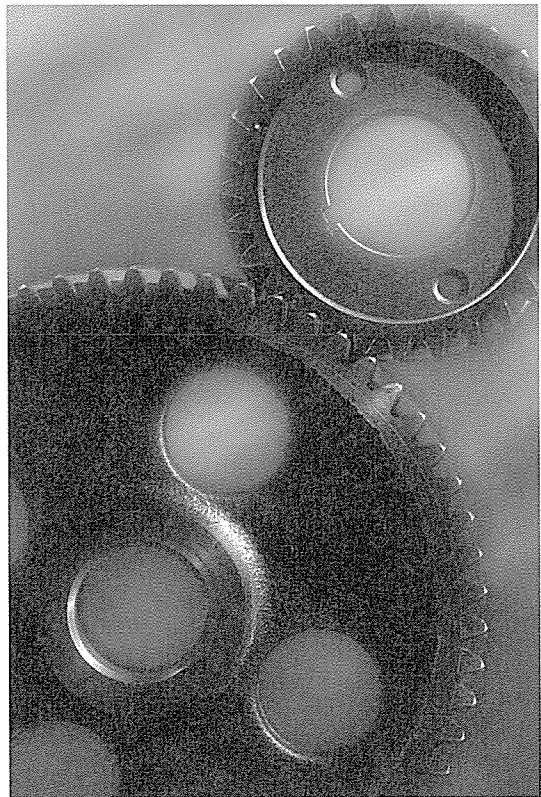
3. CDM사업의 장애요인과 극복

물론, CDM사업은 발굴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국제적인 복잡한 거래절차가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한다. CDM사업은 국가간의 CER(CDM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급되는 Credit)의 국제이전, UNFCCC산하 CDM EB등록 등 국제간의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며, 베이스라인방법론 연구, PDD(사업계획서) 작성, 해당국의 국가승인, DOE(운영기구)의 확인, CDM EB의 등록, DOE의 검증, CER의 발급 등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하나의 큰 어려운 점은 CDM사업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Additionality(추가성) 요건이다. 추가성에는 재무적, 기술적, 환경적 추가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함에 따라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에게 부여된 과제이며,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감



축과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너지사업자가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